

## 학회경조사관련사무국업무지침

제 정: 2019.04.15.(이사회승인)

경조사	조치사항	대상
결혼 (본인, 자녀)	1. 홈페이지 회원소식 업로드 2. 이메일 발송	모든 회원 <sup>(주1)</sup>
	3. 화환 발송(10만원 이하)	별도로 정함 <sup>(주3)</sup>
부고 (본인, 배우자, 부모 <sup>(주2)</sup> )	1. 홈페이지 회원소식 업로드 2. 이메일 발송	모든 회원 <sup>(주1)</sup>
	3. 근조기 발송	별도로 정함 <sup>(주3)</sup>
영전	1. (축하)난 발송(10만원 이하)	유관기관장 및 임원급 <sup>(주4)</sup>
기타 경사 <sup>(주4)</sup>	1. 홈페이지 회원소식 업로드 2. 축전 발송	별도로 정함 <sup>(주3)</sup>

(주1) 알림일 현재 회비가 납부상태인 회원에 한함.

(주2) 시부모 및 빙부모 포함

(주3) 별도로 정한 대상은 아래에 해당

- 임원, 감사, 역대회장(명예회장 포함)
- 자문위원(당해연도), 고문(당해연도)
- 특별회원(대표자), 유관기관(대표자)
- 학회·특별회원·유관기관(행사)
- 학회에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(회장이 인정하는 경우)

(주4) 회장의 판단으로 정함